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9. 25.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9월 8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9월 8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75회(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2000년 9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홍성배)

가. 제정이유

- 2000년 ASEM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각종 행사를 대비 역점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등에우밋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감면범위를 확대코자 함.

나.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등에우밋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조례 제2조 제2항의 면허세의 감면범위를 상이 등급 6급에서 7급으로 범위확대 - 개정(안 제2조)
-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연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당해 연도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하나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5년 이내에 재정비대상이 되어 통보된 경우에는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 - (안 제23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대완)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에우밋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거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자동차를 공동등록할 경우 면제해 주는 자동차면허세를 종전 “6급”에서 2000. 1. 1부터 “7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확대 실시하는 것이며 2000년 ASEM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해,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도시환경개선 차원에서 효과적인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하는 내용을 우리 구의 구세감면조례 제23조의2에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행정자치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의 준칙안에 의한 개정안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나 다만 구세에서 감면하지 말고 시세 등 시의 재원으로 감면 또는 비용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제23조의2(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신설 시행시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23조의2의 제4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규정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 완료·통보 대상 건축물은 옥외광고물 정비 완료수와 비용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안)제23조의2(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4항에 제1항에 규정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 완료·통보대상 건축물은 옥외광고물 정비 완료수와 비용 등을 감안하여 구청이 정한다를 신설.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23조의2(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4항에 “제1항에 규정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 완료 통보대상 건축물은 옥외광고물 정비 완료수와 비용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를 신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호
----------	---------

제안년월일 : 2000. 9. 23.

제안자 : 빈웅길위원외1인

1. 수정(폐지)이유

-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사항 신설 시행시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감면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구청장이 옥외광고물 정비 완료수와 비용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23조의2(옥외광고물특별정사업에 대한 감면) 제4항에 “제1항에 규정된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 완료 통보대상 건축물은 옥외광고물 정비 완료수와 비용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를 신설함.

수정안 대비표

=====

개 정 (안)	수 정 (안)
제23조의2(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연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세를 50% 경감한다. 다만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5년 이내에 재정비 대상이 되어 통보된 경우에는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정한다.	제23조의2(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가 완료·통보된 이후에 감면하되 정비완료 당해 연도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경감액을 환부한다.	②.....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당해 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경감세액은 각각 납세의무자 별로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④제1항에 규정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 완료·통보 대상 건축물은 옥외광고물 정비 완료수와 비용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신 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6
------------	-----

제출년월일 : 2000. 9. 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 이유

2000년 ASEM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 역점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감면범위를 확대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조례 제2조 제2항 면허세의 감면범위를 상이등급 6급에서 7급으로 범위확대 - 개정(안 제2조)

나.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연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당해 연도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하나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5년 이내에 재정비대상이 되어 통보된 경우에는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 - 신설(안 제2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9조 및 구세감면조례개정준칙안

○ 세정 13400 - 398 (2000. 4. 10)

○ 세정 13400 - 625 (2000. 6. 7)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제2항 본문중 “6급”을 “7급”으로 한다.

제23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2(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연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당해 연도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한다. 다만,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5년 이내에 재정비대상이 되어 통보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가 완료·통보된 이후에 감면하되 정비완료 당해 연도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경감세액을 환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당해 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경감세액은 각각 납세의무자 별로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경감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illegible]